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10.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나, 최근 실집행률 부진, 주민요구 변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주민만족도 향상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나.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 건축비 지원(별표1)

-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 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라.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를 “(지원사업
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물”을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 중”을 “중요재산 중”으로, “시설물에”
를 “중요재산에”로 한다.

별표 1의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세부 내용란 기호(·) 중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같은 기호(·) 중 “사업”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그 밖의 지원사업의 세
부 내용란 중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사업 [이주자 택지취득비 및 주택
건축비 지원(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가 주변지역이 속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민이익공유형발전소 건설 지원 등 포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 ④ (생 략)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 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다. <단서 신설> ⑥ ~ ⑨ (생 략)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u>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u>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u>) ① 제19조 및 제22 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 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u>시설물</u> 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 른 <u>시설물 중</u> 그 지방자치단체 가 취득한 <u>시설물에</u> 대하여 해 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제30조(<u>지원사업에 따른 중요재산 의 취득·관리</u>) ① ----- ----- ----- <u>토지, 시 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u> (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 -----. ② ----- -- <u>중요재산 중</u> ----- ----- <u>중요재산에</u> ----- ----- ----- ----- ----- -----

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이주자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민이익공유형발전소 건설 지원 등 포함]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경비 지원을 포함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지역협력과	
연 락 처	(044) 201-7842